

엘엔에프 글로벌 인권노동 방침

엘엔에프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행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실천한다.

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인권·노동 원칙,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핵심협약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표준을 지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을 준수한다.

엘엔에프는 본 글로벌 인권노동 방침을 전세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및 노동 관련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한다.

더 나아가 본 방침을 임직원, 고객 및 협력회사 등 엘엔에프의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인식개선 및 확산에 기여한다.

| 구 분 | 내 용 |
|------------|--|
| 인도적 대우 |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 강제노동 금지 | 정신·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고용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원본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 아동노동 금지 |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6 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 만 18 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야간근무 및 초과근무 포함)를 부여하지 않는다. |
| 차별 금지 | 모든 임직원에게 채용과 승진, 보상, 훈련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성별, 연령, 인종, 종교, 노조활동, 장애, 임신, 결혼여부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

| | |
|-----------|--|
| 근로시간 |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초과 근로 시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는 관련법에 근거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
| 임금 및 복리후생 | 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
| 결사의 자유 |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임직원이 협박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공급사는 “엘앤에프 글로벌 인권노동 방침”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 및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엘앤에프** 귀중